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2
----------	-------

발의연월일 : 2021. 10. 6.

발의자 : 민홍철 · 김홍걸 · 정성호  
신정훈 · 최인호 · 양향자  
윤후덕 · 이광재 · 서영교  
기동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감항인증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항인증 전문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이 지급한 출연금을 받아 감항인증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일반적인 경상비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감항인증 수행에 대한 출연금 형태의 지원을 위해서는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항인증 주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항인증 사업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감항인증 업무 지원으로 군 감항인증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 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 · 평가 · 분석 · 검증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u>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제12조(예산의 지원) ① ----- ----- ----- ----- -----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 ----- ----- ----- -----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